

누구나, 쉽게,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 확인 가능

- ‘복지로’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및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개시(9.30) -
 - 올해 말 청소년 장애인등록증에 교통카드 기능 부가 -
 - 2025년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예정 -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2024년 9월 30일(월)부터 ‘복지로(bokjiro.go.kr)’를 통해 「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」를 시행한다.

장애인이 공원, 박물관,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 받기 위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게 되는데, 이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인 경우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.

앞으로는 누구나, 쉽게,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. ‘복지로’에 로그인하고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바로 가려낼 수 있다.

이 서비스를 통해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요금을 감면받는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개정된 장애인복지법(2024.2.13.시행)에 따르면 타인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.

또 장애인등록 절차 등과 관련한 편의가 개선된다. 9월 30일부터 ‘복지로’ 에서 「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*」이 가능해지며, 12월부터는 현재 우편으로 수령하는 장애정도심사 결과를 ‘국민비서 알림서비스(카카오톡, 네이버앱 등 민간앱을 통한 행정정보 알림서비스)’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,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장애인도 성인 장애인과 같이 ‘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’ 을 발급받는다.

* 장애인등록 신청에 첨부되는 진단서(원본), 진료기록지 등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함

아울러 2025년 말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.

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“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등록증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받는 장애인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 라며, “앞으로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추진과 함께 장애인등록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가겠다.” 라고 밝혔다.

- <붙임>
1.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개요
 2.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개요
 3.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개요
 4. 장애인등록증 부가 기능 및 유형
 5. 홍보전단지(안)

담당 부서	장애인정책국	책임자	과 장	방석배 (044-202-3280)
	장애인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두유림 (044-202-3299)

붙임1

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(24.9.30~)

- (추진배경) '24.2.13일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으로 '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' 근거 마련(제32조제8항 신설)

※ (24.2.13. 장애인복지법 개정 주요 내용) ▲장애인 사망의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하도록 하는 유족에 대한 규제 폐지(제32조의3제2항제1호 단서 신설), ▲반납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 사용등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,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(제87조제2호의2 신설), ▲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사전적 조치로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근거규정 마련(제32조제8항 신설)

- (이용방법)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, 누구나 '복지로(bokjiro.go.kr)'에 로그인 → 확인하고자 하는 장애인등록증 정보 입력 → "진위확인" 버튼 클릭 → 진위확인 메시지* 표출

* '입력하신 내용은 장애인등록 정보와 일치합니다.' 또는 '입력하신 내용은 장애인등록 정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'

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정보 - 필수 입력 정보입니다.

성명	<input type="text"/>
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<input type="text"/>
발급일자	<input type="text"/> ※ 입력예시 : 20230101
확인자(기관)	<input type="text"/>

진위 확인

※ 이용 안내

- ▶ 장애인자격 중지, 등록증 유효기간 만료 또는 반납·폐기된 등록증의 경우 유효하지 않은 등록증으로 조회
- ▶ 대상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도 조회가 가능하나, 행복이음에 등록된 성명과 일치할 경우에만 정상조회 가능
- ▶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진위 확인 서비스는 사진의 위조, 변조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
- ▶ 서비스 이용내역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거하여 소관부처(보건복지부)에 제공될 수 있음
- ▶ 장애인등록증 진위 확인에 대한 정보 요청 시, 조회 요청자의 이력이 보관되므로 유의 바람

- (기대효과) '누구나', '쉽게', '신뢰'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이 가능하므로, ▲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및 부정수급 방지, ▲장애인등록증을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받는 장애인 편의 제고 등 기대

붙임2

'복지로' 를 통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(24.9.30~)

- (추진 목적) 장애인등록 신청을 위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완화
- (신청 절차) '복지로(bokjiro.go.kr)'에 로그인*하여 장애인등록 신청 → '행복이음'에서 지자체 담당자에게 신청 알림 → 필요한 경우 지자체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유선등으로 보완사항 안내 → 신청인은 우편 또는 방문하여 필수 첨부서류 제출(신청 완료)
- * 신청인이 미성년인 경우 신청인과 주소가 같은 부모가 로그인하여 대리 신청 가능

※ 신청 경로 : 서비스 신청 > 민원서비스 신청 > 장애인등록 체크

복지로

복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복지지도 복지도우미 복지신고

민원서비스 신청

민원 서비스

복지급여계좌변경	청소년증(재발급/분실/분실 철회)	장애인복지카드(재발급)
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하기 <input type="button" value="자세히보기"/>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하기 <input type="button" value="자세히보기"/>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하기
노안일자리사업	장애인등록	
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하기 <input type="button" value="자세히보기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신청하기	

저장 후 다음단계

- 화면 진행단계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 동의,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입력 후
- “제출하기” 버튼 클릭!!

- (유의사항) ▲온라인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장애심사용 진단서(원본), 소견서, 진료기록지, 검사결과지 등 필수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함, ▲필수 첨부서류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된 날이 장애인등록 신청일로 인정됨, ▲만일 30일 내에 필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은 자동 취소됨

□ **추진 배경**

- 「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」에 따라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추진
 - * ('23)국가보훈등록증 → ('24)주민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여권 → ('25)장애인등록증
 - ※ '25년 예산(정부안)에 68억원 반영

□ **추진 필요성**

- 실물 신분증은 소지 불편, 개인정보 노출, 위변조 및 도용 위험, 온라인 활용 제한 등의 한계가 있으며,
 - 특히 장애인등록증은 ▲요금감면 등의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해 상시 소지 필요, ▲신원확인 과정에서 타인 시선으로 인한 불편 등 도입 필요성이 매우 큼

□ **모바일 장애인등록증 (예상)이미지 (※ 추후 변경 가능)**



□ **기대 효과**

-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다양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
- 생체정보 인식을 통한 본인확인을 통해 장애인서비스 부정수급 방지
- 모바일 신분확인 시스템 기반으로 비대면 경제 활성화 기여

붙임4

장애인등록증 종류 및 부가 기능

※ (참고) 장애인 복지카드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령상의 명칭은 '장애인등록증'이나,

실제 장애인등록증에는 '복지카드'라고 표기되므로 장애인등록증을 흔히 '장애인 복지카드'라고 부름

□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 /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

	신분증형	금융카드형
이미지		
기능 유무	금융 기능 없음	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포함
표기사항	(성명, 장애정도 등 공통사항 외) 주민번호 13자리, 주소	(성명, 장애정도 등 공통사항 외) 생년월일

- 위 유형 중 본인의 선택에 따라 1장의 장애인등록증만 발급 가능
- 신분증형의 경우 주소,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과 같이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고,
 - 금융카드형은 등록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함

□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

- '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'이란 지하철 무임 및 버스 유임으로 결제되는 교통카드 기능을 포함하는 장애인등록증을 말함
- ※ 2023.4월부터 모든 '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'에 교통카드 기능 포함

(앞면)

2024년 9월 30일부터



복지로 를 통해

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진위확인이 가능해집니다.



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,
이제 서로 믿고 확인할 수 있어요~

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이용방법

- 👉 「복지로(bokjiro.go.kr)」에 로그인
- 👉 서비스 신청 > 증명서발급·진위확인
- 👉 장애인등록증 진위 확인으로 이동
- 👉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발급일자 등 정보 입력 후 → “진위확인” 버튼 클릭!!

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정보

· 성명

· 주민등록번호

· 발급일자 (발급연월일: 20220301)

· 확인차기인



- 📌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잃어버리면 즉시 분실 신고해 주세요!
- 📌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*해주세요!
* 장애인복지법 제 87조(벌칙) 2호의 2에 따라 처벌 가능
- 📌 다른 사람의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을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, 본인의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이라도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사용하면 처벌*받을 수 있습니다.
* 장애인등록 취소 또는 1년이하의 징역,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,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(뒷면)

2024년 9월 30일부터



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이 가능해집니다.



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방법

- 1. 「복지로(bokjiro.go.kr)」에 로그인*
* 신청인이 미성년인 경우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은 부모가 로그인하여 대리 신청 가능
- 2. 서비스 신청 > 민원서비스 신청 > 장애인등록 체크 >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!
- 3. 화면 진행단계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 동의,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입력 후
- 4. "제출하기" 버튼 클릭!!



- ☑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장애심사용 진단서(원본), 소견서, 진료기록지, 검사결과지 등 필수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함
- ☑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필수 첨부서류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된 날이 장애인등록 신청일로 인정됨
- ☑ 만일 30일 내에 필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은 자동 취소됨